

#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 가이드라인

2025. 11.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예탁결제원

\* 본 가이드라인보다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가이드라인 배포 이후 추가 검토 사항이 발생하거나 관련 법령 및 규정이 개정되는 경우,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보완될 수 있습니다.

## I.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투자업규정」(이하 '규정') 제6-7조제7항 및 제6-14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른 외국인의 주식 매매거래를 일괄주문 및 일괄결제의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개설한 "외국인 통합계좌"(이하 '통합계좌')에 관한 업무를 투자매매·중개업자(이하 '회사')가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 II. 통합계좌 개설

### 1. 계좌개설 절차

통합계좌 개설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회사별로 필요시 구체적인 순서, 방식 등을 조정 가능함

가. 외국 금융투자업자와 회사는 통합계좌 개설을 위한 업무 협의 및 계약체결 진행 필요

- \* 아래 '2., 3.'에 따라 적절한 계좌개설 주체인지 확인이 필요
- \* 아래 '4.'의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체결을 체결할 것

나. 외국 금융투자업자는 상임대리인에 보관계좌 개설

다. 회사는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통합계좌 개설

- \* 아래 '5.'에 따라 확인의무 이행이 필요
- \* 계좌 명의자(외국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실명확인은 일반적인 외국인투자자의 실명확인 방식과 동일하며, 식별번호는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IRC, LEI를 사용(별도 통합계좌용 IRC, LEI 없음)

### 2. 계좌개설 명의(규정 §6-14의2① iv)

외국인이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할 때에는 "계산주체"(최종투자자)의 명의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합계좌는 계좌개설 특례를 적용 받아 외국 금융투자업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

### 3. 계좌개설 주체(규정 §6-7⑦ 개정 예정)

국외에서 투자매매업, 투자증개업 또는 집합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적법하게 영위하고 있는 외국 금융투자업자(이하 ‘외국 금융투자업자’)

- \*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라이센스’ 확인은 당해국 정부·감독당국 등이 발급한 설립증명서, 금융당국 등록서류 및 홈페이지 화면 등을 통해 확인  
- (예) 미국 : FINRA 등록확인서 · Broker-check 화면, SEC 등록증명 · EDGAR 시스템 등
- \* 통합계좌를 이용하는 외국인(최종투자자)은 연기금 등을 제외한 개인고객, 법인고객, 펀드에 한정

### 4. 계약체결

회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시하여 외국 금융투자업자와 통합 계좌 개설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가. 외국 금융투자업자는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감독·검사·조사 등을 이유로 한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최종투자자별 거래내역, 식별번호 등을 요청 받은 즉시 직접 또는 상임 대리인을 통해 관련 내용을 국내 증권사에 제출할 의무
- 나.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 약관에 ‘한국 금융당국의 요청시 거래 내역정보를 조속히 제출’할 것을 포함
- 다. ‘가.’의 사항을 미이행시, 계좌거래 정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
- 라.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실제소유자에 대한 확인의무,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구축 및 운영 의무를 명시

### 5. 계좌 개설시 확인의무

- 가. 회사는 특정금융정보법(§5-2), 테러자금금지법(§5①,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43①1. 포함)에 따라 통합계좌에 대해 다음과 같은 확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1) 고객(통합계좌) 명의자 : 실지명의, 업종, 본점 및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 국내의 거소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 2) 실제소유자(최종투자자) 확인 : 실제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

\* 구체적인 실제소유자 판별 방법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10의5 참고

- 3)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확인 :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및 미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가 아닌 자로서 그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직간접 소유·지배 법인) 여부 확인

나. '가.2)'에도 불구하고, 통합계좌 명의자인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회사의 최종투자자에 대한 실제소유자 확인 의무가 면제됨

- 1) 계좌개설을 진행하는 국내 금융회사등은 통합계좌 명의자에 대한 고객 신원확인을 적절히 이행
- 2) FATF 상호평가를 통해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확인된 국가에 소재한 외국 금융회사가 통합 계좌의 명의자일 경우
- 3) 통합계좌 명의가 본인 고객인 최종투자자에 대한 고객확인 의무를 FATF 국제기준에 따라 적절히 이행
- 4) 통합계좌 명의자인 외국 금융회사가 소재국의 금융당국으로부터 충실히 감독·모니터링을 받고 관련 제재를 받지 않은 사실이 증빙된 경우\*

※ (FIU 해석) 획일적인 기간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며 회사가 위험기반접근법 (Risk- Based Approach)에 따라 판단해야함

- 통합계좌 명의자인 외국 금융회사가 소재국 금융당국으로부터 감독·검사 받은 내역, 제재를 받은 경우 제재수준 및 제재 이후 후속조치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제재이력 없음을 증빙하여야 하는 기간을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함

## 6. 계좌 관리(규정 §6-14의2①)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통합계좌 및 보관계좌 개설 시, 회사 및 상임대리인은 해당 계좌가 외국인 통합계좌임을 내부 시스템 부기, 구분 값 등을 통해 기록·관리하여야 함

- \*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자체 법인계좌와 통합계좌는 동일한 식별번호를 사용 하므로, 권리 행사 등을 위해 회사 및 상임대리인은 내부적으로 반드시 두 계좌를 명의 구분·관리할 필요가 있음

## III. 통합계좌의 상품 주문

### 1. 주문가능 상품

통합계좌를 통해 상장주식 매매거래가 가능

### 2. 주문제한 거래

가. 공매도 : 다수 최종투자자의 매매거래를 일괄하여 주문·결제하는 통합계좌 특성상 회사가 다수의 최종투자자의 공매도 가능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등 공매도 거래를 위한 자본시장법상 의무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통합계좌를 통한 공매도는 제한 됨

나. 외국인 1인당 취득한도 관리 대상 주식 : 통합계좌로 주식의 매수주문을 받은 때에 최종 투자자의 취득한도 초과여부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외국인 1인당 취득한도 관리 대상 종목의 매수주문을 거부하여야 함

### 3. 업무 절차

가. 회사는 통합계좌 고객의 주문을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집행하며, 회사별로 필요시 구체적인 업무처리 방식은 일부 변경 가능함

- 1) 외국 금융투자업자는 최종투자자의 매매주문을 접수하여 국내 증권사에 매매주문
- 2) 국내 증권사는 매매체결내역을 외국 금융투자업자에게 전달, 보관기관에 매매자료를 송부
- 3) 외국 금융투자업자는 결제지시서를 보관기관에 발송

\* 외국 금융투자업자는 보관기관 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환은행, RFI(해외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등을 통해 주식 투자자금을 원화로 환전하여 본인의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에 예치 가능 (투자전용대외계정은 개설하지 않아도 됨)

외국 금융투자업자는 본인의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을 통해서 자기분 또는 고객분의 주식 매매대금 결제 가능  
단, 증권 보관계좌는 자기분과 고객분(통합계좌)을 구분하여 관리

- 4) 국내 증권사와 보관기관은 각각 결제내역을 예탁결제원에 업로드하고 상호매칭이 완료되면 결제 발생

\*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자체 법인계좌와 통합계좌는 동일한 식별번호를 사용하므로, 계좌간 매칭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좌번호 입력, 통합계좌 체크 등에 주의

※ 상단의 업무절차는 은행이 보관기관 역할을 수행할때의 절차로, 증권사가 보관기관 역할 수행시, 증권사 자체적인 주식보관, 결제 프로세스에 맞추어 수행  
\* 환전은 외국환 은행을 통해 또는 내부 환전을 통해 진행

나. ‘가.1)’에서 외국 금융투자업자는 국내 증권사에 매매주문시  
①최종투자자별로 주문을 구분하여 집행하거나 ②매수주문간 또는 매도주문간 합산하여 진행하는 방식이 모두 허용됨.  
다만, 매수·매도주문을 상계(netting)하는 것은 금지 됨

## < 주문내용 비합산 >

## < 매수주문간, 매도주문간 합산 >



## IV. 보고의무

### 1. 보고사항

#### 가. 상시 보고(세칙 §5-3 i)

회사는 통합계좌 명의자(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상장주식 매매거래 내역을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FIMS)를 통해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함. 이는 기존 외국인 투자계좌와 동일한 보고사항에 해당함 (단, 보고시 통합계좌임을 표시하여 보고)

#### 나. 월말 보고(세칙 §5-1의2)

- 1) 외국 금융투자업자는 직접 또는 상임대리인을 통하여 통합 계좌 최종투자자의 주식 거래내역을 10년 동안 기록·유지 하여야 하고,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동계좌가 개설된 국내 회사에 제출하여야 함. 제출양식은 2)의 금감원 보고양식을 참고하여 회사가 마련 가능함
- 2) 회사는 1)에 따라 제공받은 내역을 10년동안 보관·관리하고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FIMS를 통하여 금감원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양식은 다음과 같음

외국인 통합계좌 (통합계좌 명의자)				외국인 통합계좌 내의 외국인 (최종투자자)												
				최종투자자						주식종목			거래내역			
법인명 번호 <sup>1)</sup>	식별 코드 <sup>2)</sup>	국가 구분 <sup>2)</sup>	투자자 구분 <sup>2)</sup>	성명/ 법인명	식별 번호 구분	식별 번호 <sup>3)4)</sup>	국가 코드	투자자 구분	종목명	종목 번호	매매 구분	체결 일자	결제 일자	총금액	수령	가격
1) IRC 또는 LEI (통합계좌용 IRC, LEI가 따로 발급되지 않음)																
2) <FIMS 인터페이스 정의서>에 따른 구분값																
3) (1순위) 개인: 여권번호, 법인: IRC 또는 LEI, (2순위) 납세자번호(Tax identification numbers) * '1순위'인 식별번호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만 '2순위'인 최종투자자의 납세자번호																
4) 납세자번호(Tax identification numbers)를 작성할 경우 * 각 국가별 상세 납세자번호 정보는 "OECD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다. '가.', '나.'와 별개로 금융당국이 감독·조사 등을 이유로 통합 계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시, 회사 및 외국 금융투자업자는 관련 내용을 제출하여야 함
- 라.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가.~다.'까지의 보고의무 이행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계좌거래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외국 금융투자업자는 조속한 자료 제출을 통하여 의무 위반을 해소하여야 함

## 2. 기타 보고사항

### 가. 지분 대량보유 등의 보고

통합계좌는 원칙적으로 최종투자자에게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있지만, 예외적으로 통합계좌 명의자가 최종투자자와의 계약 등을 통해 의결권 등을 보유하는 경우,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로서 계좌 명의자도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부담할 수 있음

\* 계약에 따라 주식의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 포함)을 가지는 경우 '소유에 준하는 보유'에 해당(자본시장법률 §142)

\* 회사와 상임대리인은 외국 금융투자업자에게 계좌개설 시점부터 동 보고 의무에 대해 적극 안내할 필요

## V. 기타

### 1. 권리행사

통합계좌 권리행사는 일반계좌의 권리행사 방법과 원칙적으로 동일

가. 의결권 행사 : 통합계좌 명의자가 상임대리인에게 의결권 행사를 신청하고 상임대리인은 예탁결제원으로, 예탁결제원은 기업(주권발행회사)으로 의결권 행사 내역을 통보함. 다만, 최종투자자별로 의결권 행사 내용이 상이한 경우, 상법에 따라 통합계좌 명의자가 투자자별 의사를 취합하여 의결권 불통일 행사가 가능(상법 제368조의2)

나. 권리 행사(배당금 수령, 신주인수 등) : 예탁결제원은 통합계좌 명의자의 보관주식 전체 수량에 대해 동 명의자에게 일괄하여 권리를 배정하며, 이후 통합계좌 명의자는 최종투자자별로 보유수량에 맞게 안분하여 최종 지급하게 됨

### 2. 과세방안

통합계좌 명의자에 대해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소득원천 소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함. 다만,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세·제한세율 적용을 받고자 하는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지급자는 기존 절차에 따라 경정청구가 가능(소득세법 제156조의9, 법인세법 제98조의8)

### 3. 내부통제 관리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회사는 통합 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외국 금융투자업자 등 계좌주에 대해 사전 및 사후적으로 다음의 내용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음

## 가. 사전적 확인 사항

- 1) 체크리스트 : 회사는 통합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외국 금융 투자업자에 대해 재무제표를 통한 건전성, 소재국 금융당국의 제재 이력 · 소재국 감독당국의 인가 증명서 등을 통한 회사 이력 확인, 준법감시인 독립성 검토, 외국 금투업자의 지속적인 영업활동 가능성, 내부통제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등 계좌주가 주문 수탁과정 및 임직원의 국내 주식 거래 관련한 불공정거래 및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내부통제 수단을 갖추고 있는지 사전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점검
- 2) 실사(Due diligence) : 회사는 적합한 현지 실사(On-site due diligence)를 통해 통합계좌 개설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지 실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사회 또는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 이를 대체할 만한 절차를 마련하여 실시하고 현지 실사가 불가능하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이유, 실사방법의 변경이 투자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대체적으로 실시한 절차 및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함
- 3) 준법감시인 판단 : 체크리스트 점검 내용 및 실사 결과를 토대로 회사내 준법감시 부서의 계좌 개설 여부에 대한 사전 점검을 받아야 함

## 나. 사후적 확인 사항

- 1) 고객확인의무 준수 확인 : 同 가이드라인의 “II. 5. 나. 1)~4)”를 계좌주가 적절히 진행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
- 2) 불공정행위 예방 : 고객 및 임직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의심거래에 대해 외국 금투업자가 주문 수탁을 거부하도록 하는 등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 실시\*

\* 상시감시체제, 상시감시인력, 영업점포 예방활동, 요주의계좌 기록·보고, 모니터링 시스템 감시 기준, 고객의 불공정행위 발견시 조치 등이 적절한지 포함하여 확인

## VII. 유의사항

同 가이드라인은 관련 법령 개정, 사례의 누적,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에 미치는 영향,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